



특고압선로 방호작업 중 감전



전압강하 방지를 위한 특고압선로 신설 · 연장작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활선작업용 고소작업차에서 특고압선로 애자 부분에 절연커버(고무블랑켓)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특고압선(22,900V)에 감전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특고압선로 활선작업 시 절연용 개인보호구 미착용(버킷 내부에 보관)
- 절연 고무장화, 절연 고무장갑 등 미착용

안전작업

TIP

1 특고압선로 활선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

- 절연용 장갑, 절연용 고무소매 등 절연용 보호구 착용



절연용 장갑 착용



절연 고무소매 착용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(절연용 보호구등의 사용)





특고압선로 방호작업 중 감전

활선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세요!

